

방위산업 관련 연구 보안관리지침

제정 2018. 8. 20.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방위산업 관련 연구(이하 ‘방산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본교 소속 구성원 (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등) 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의 의뢰로 방산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정보보호규정 및 세칙과 국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참조한다.

제3조(비밀의 구분) 방산연구 관련 자료 중 비밀은 다음 각 호 및 별표1 「비밀등급별 분류기준」에 따라 I급비밀, II급비밀, III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을 I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을 II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을 III급비밀로 한다.

제4조(보안성 검토) 대학에서 생산하여 대외 제공하는 방산연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친다.

1. 자료의 대외 제공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비밀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발송한다.

3. 방산관련 문서는 보안 유해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가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발송한다.

제5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비밀누설, 비밀분실, 비밀관리 위반 등의 사고와 방산물자의 생산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기무부대에 통보하여 보안조사를 요청하고, 이를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자 인적사항

2. 사고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및 경위(6하 원칙에 의한다). 다만, 정보통신 보안사고일 때에는 자재명, 부수, 등록번호 및 보안시스템증명서 첨부

4. 사고에 대한 보안판단

5. 사후조치 사항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6조(방산보안담당관) ① 대학 내 방산연구 보안을 총괄하는 방산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정’ 제6조 3항에 의한 ‘연구보안책임자’로 한다.

② 방산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방산연구 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2. 방산연구 보안 관련 규정의 제·개정
3. 방산연구 보안 관련 제반사항 관리 및 총괄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 방산연구 보안 분야 안건 심의 상정
5. 방산연구 종사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계층별 방산보안교육 실시

제7조(방산보안실무자) ① 대학 내 방산연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방산보안실무자는 연구보안실무자가 겸임한다.

② 방산보안실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방산연구 보안 업무 범위에 관련된 실무 사항
2. 방산연구 보안 관련 규정 사항
3. 방산연구 보안 관련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련 사항
4. 신원조사대장을 담당자 외 열람할 수 없도록 기록, 유지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

제8조(인원보안) ① 방산연구 종사자는 방산연구를 시작하기 전,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방산보안실무자에게 제출한다.

② 방산연구 종사자는 방산연구를 종료하거나 퇴직할 시, 퇴직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방산보안실무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퇴직자 보안) 방산보안담당관은 방산연구 퇴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실시한다.

1. 비밀취급인가증이 있을 시 반납
2. 해당 방산연구 구역 출입권한 삭제
3. 전·후임자 비밀 인계·인수 실태 확인
4. 방산관련 군사비밀을 포함한 방산자료 정리기간 부여
5.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가. 비밀문서,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 보안점검
 - 나. 퇴직 후 비밀누설 금지 등 포함 보안교육
6. 해당 방산연구 관련 자료 접속 권한 삭제

제10조(보호구역) ① 방산연구 관련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보관소

2. 비밀 기술자료 보관실
 3. 비밀처리 전산단말기 설치장소
 4. 회의실(비밀회의시에 한함)
 5. 그 밖에 특별히 통제가 요구되는 시설
 6. 그 밖에 외래인의 출입제한 및 안내가 요구되는 시설
- ② 보호구역에는 아래와 같은 표시판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해야 한다.

경 고
(보호구역)

이 구역 내의 출입은
업무상 관계있는 자에 한함.

제11조(비밀관련시설보안) 비밀합동보관소 및 비밀분산보관소는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출입문의 시건장치
2. 창문의 시건장치
3. 출입 가능 인원의 제한

제12조(방산자료 관리절차) 기술자료, 설계도 등의 방산자료는 민수자료와 분리하여 보안대책이 강구된 별도의 시설 및 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방산연구 종사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행해야 한다.

1. 정기적 전산자료 백업(Backup) 실시 및 별도 안전지역에 보관
2. 저장매체 보유현황 관리 (별지 제6호 서식)
3.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4. 전산자료 주관 부서장이 필요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하도록 전산자료 접근범위 제한
5. 비밀자료 입력, 저장, 관리 시 독립된 파일 또는 별도 데이터베이스 지정

제14조(휴대형컴퓨터 관리·운용) ① 방산자료를 다루는 휴대형컴퓨터(노트북, PDA 등)를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에게 대여 시 교육을 실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인증을 위한 부팅용 비밀번호 운용 및 저장자료 보호를 위한 보호시스템 설치 운용
2. 대여용에는 비밀을 저장하여 반출할 수 없다.
3. 고정업무용은 외부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승인권자 승인 및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반출한다.

- 4. 컴퓨터의 보관 또는 휴대 이동간 적절한 보호조치
- 5. 취급자는 분실 시 자료유출에 대한 책임 부여
- ② 휴대형 컴퓨터의 분실 및 도난 시에는 즉시 보안담당관 및 지원기무부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기억매체 관리) ① 방산업무용 저장매체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장매체 관리대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산관련 군사/비밀 자료가 저장된 업무용 USB등 저장매체는 외부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 접속·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8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밀등급별 분류기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발체

1. 비밀 분류 개념

가. 방산물자의 중요도와 가치에 따른 분류

구분	분류기준
Ⅱ급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전력증강 및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장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유도무기, 핵관련 기술개발, 화생방 등 외국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연구계획 및 결과
Ⅲ급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함 및 수상함의 소음, 진동 등 함정 특성이 포함된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 전력지원체계라도 비밀내용 포함시 비밀사업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력사업 및 정보통신체계사업 관련 S/W개발, 시뮬레이터, 영상데이터 등

나.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의 비밀분류기준과 연계한 비밀 분류

구분	분류기준
Ⅱ급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에서 분류중인 전력투자사업 및 연구개발분야 중 핵심사업으로 미래 핵심 전력체계 종합연구 및 개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무기 개발 가능성 기술검토 (연구, 기술, 시험 등) •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 분류 기준상의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 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적용 • 정보전력장비, 잠수함, 유도무기 제조 기술에 관한 사항
Ⅲ급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및 수송계획 • 전자전, 음향, 통신보안장비 사업과 관련된 사항 • 일반적이고 부분적인 내용보다 포괄적인 사항을 비밀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방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능력

2. 비밀 분류 기준

구분	분류기준
Ⅱ급비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Ⅱ급 비밀에 해당하는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등 방산물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 등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작전요구능력(ROC)에 관한 사항 나. 정보전력장비, 잠수함, 유도무기의 운용 방법, 제원 성능, 제조에 관한

	<p>소요자재의 강도, 제조기술에 관한 사항 및 강약점 등이 종합된 사항</p> <p>다. 연구개발 또는 성능개발·생산 중에 있는 정보전력장비, 잠수함, 유도 무기의 개발 및 성능개량계획, 종합된 핵심 부품 설계도면, 체계개발계획서, 종합시험평가 등에 관한 사항</p> <p>라. 통신보안장비, 전자전장비(EA, ES)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운용 프로그램, 제원 및 특성, 설계도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정보전력, 정보통신체계, 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체계개발계획 및 종합시험결과 3. 유도무기, 핵 관련 기술개발, 화생방 등 외국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비밀사업 연구계획 및 종합시험결과 4. 암호화 프로그램 및 암호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국방과학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Ⅲ급비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Ⅲ급비밀 사업에 해당하는 주요 무기체계(완제품)의 방산물자·장비와 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간생산계획, 핵심 부품 설계도면, 성능 및 강약점에 관한 사항 2. 주요 무기체계(완제품) 작전요구능력(ROC)상의 일반화되지 않은 특성 3. 주요 전자전 무기의 운영주파수 범위 및 능력, 화생방물자의 방호 능력 등 제원에 관한 사항 4. 종합적인 방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 5. 군의 특수 목적수행을 위하여 제조(위탁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공개되지 않은 주요무기체계의 해외구매에 관한 사항 6. 비밀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 방산물자의 종합적인 전용 원자재 및 기기의 소요계획과 도입 및 저장 또는 비축되는 품목, 수량에 관한 사항 7. 주요 무기체계(완제품)의 대외 판매정책 및 결정사항 8. 잠수함 또는 수상함 소음, 진동 등 함정 특성에 관한 사항 9.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또는 수송계획 10. 전투기, 잠수함, 전투함정, 유도무기 등 주요전략 및 전술 무기의 국내제조를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협력 및 합작 등에 관한 사항 11. 주요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서 정부주도하 개발하는 방산물자 중·장기 연구개발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12. 군사보안목표로 지정된 군사기지에 관한 사항과 정보전력사업 및 정보통신체계사업 관련 S/W 개발, 시뮬레이터 영상데이터 13. 그 밖에 국가안보상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국방과학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보안서약서

(일반종사자용)

제1부 : 업무 종사자

※ 서약집행자는 서약자가 다음 사항을 낭독하게 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할 것

보인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공사) (기술용역) (방산물자 제조납품)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지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서명)	입회자	성명	(서명)
-----	----	------	-----	----	------

※ 연구 참여에 따른 보안서약일 경우 계약자는 연구원, 입회자는 연구책임자로 함.

보안서약서

(일반종사자용)

제2부 : 퇴직·계약종료자 ※ 서약집행자는 서약자가 다음 사항을 낭독하게 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할 것

본인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공사) (기술용역) (방산물자 제조납품)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서기 20 부로 (퇴직) (계약종료)한 후에도 본인이 직접 취득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수행 중 지득한 군사비밀을 가족, 친지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
2.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지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할 것임.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서명)	입회자	성명	(서명)
-----	----	------	-----	----	------

※ 연구 참여에 따른 보안서약일 경우 계약자는 연구원, 입회자는 연구책임자로 함.

